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 개정의 필요성과 제안

한국성폭력상담소 성과인권팀 김김보연

90년대 중반부터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학내 반성폭력운동은 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으로 이어졌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 교육부에 의하면 약 4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4년제 대학의 대부분이 학내 성폭력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고 학내 성희롱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이 가져온 하나의 제도적 성과이자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대학 내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성과이자,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동안 일련의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을 지원하면서 가진 경험들은, 학칙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학칙이 가지는 중요성이 커지는 것에 비하여, 실제로 현재 학칙이 가지고 있는 빈자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

현재 학칙의 빈자리들로 여러 가지 것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실제적인 사건지원상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1)교수 성폭력 관련 구체적인 학칙 신설의 필요성, 2) 가해자 징계권한 확보와 가중징계 조항 신설의 필요성, 3)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칙 개정의 필요성, 4) 피해자 권리구제의 다양한 창구 중 하나로서의 학칙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수 성폭력 관련 구체적인 학칙 신설 필요

학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 중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가해 교수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은 크게 네 가지 장애에 부딪힌다. 첫째, 피해자가 교수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학점과 진학,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 한다. 둘째, 어렵게 피해사실에 대해 밝힌다해도, 동료들간에 지지집단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동료들 역시 교수와의 관계에서 취약한 위치 때문에 선뜻 나서서 사건을 지원하는걸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셋째, 교수성폭력 피해의 또 다른 특징은 사건 발생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교수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교수와 신뢰관계가 높을수록 더욱 교수의 행동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해”거나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행동을 한 교수는 “거부하지 않았다” 혹은 “몰랐다”는 말로 성폭력 가해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넷째, 가해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교수에 대한 처벌이 일회적이거나 미약해서 처벌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보통 처벌은 감봉, 3개월 정직 등 가벼운 조치가 취해지며, 간혹 사퇴를 한다해도 성폭력 가해 때문이 아니라

일신상의 사유로 처리되어 다른 학교에서 임용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피해학우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건을 문제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동료교수들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일련의 직·간접적인 회유 및 압력에 처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학위를 포기하게 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교수에 의한 성폭력의 판단범위, 가해 교수의 처벌 문제와 피해학우의 보호 문제에 대해 현재 학칙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 판단기준 : “거부나 동의 유무”가 아니라 “권력관계”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교수의 처벌이 경미하게 이루어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성폭력 피해의 판단기준이 가해 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교수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교수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 때문에 거부의를 강력하게 표시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후 겪을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생간의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의 “거부유무” 혹은 “동의유무”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생들의 책임을 다시 묻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수/학생간 피해는 사제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계와 권위성을 고려할 때 그 구체적인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이 요구되는 대학사회에서 피해학우들은 가해교수의 성적인 언동이나 접촉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갈등하게 된다.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믿음이라는 일반의 시각 속에서 이를 성폭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혹은 친밀감의 한 표현으로 해석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학점, 졸업논문, 진로 등 사회적·물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계와 신뢰관계’를 이용한 교수의 접근은 피해학우들로 하여금 사건당시에는 교수의 접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성폭력 피해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임을 인식하고 나서도 이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동의된 관계’라 간주되더라도, 애초에 동의자체가 불공평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동의자체가 무효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절대적 지위에 의해 접근할 때 피해자들은 신뢰와 존경 속에서 이를 믿고 따라가게 되기가 쉬워지고, 따라서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학교와 종교집단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이다. 따라서 동의하의 관계들도 단지 교수의 도덕성과 품위 훼손의 차원이 아니라, 성폭력적 특성으로 파악되고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며,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자가 먼저 성적인 제안과 희롱을 했을 때 그것을 성폭력일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다.

- 가해자 처벌: 학교측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

두 번째, 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가해 교수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교수 성폭력 사건이 가지는 심각성과 그 영향이 대학내 다른 성폭력 피해사건들보다도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녔에도, 대학 차원에서의 문제의식과 근절 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뒤에는 징계권을 가진 집단 역시 가해교수와 나름의 이해관계를 갖는 교수사회라는 점 또한 존재한다.

일례로 교수 성폭력 사건 지원과정에서, 가해사실이 인정된 경우에조차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발언들 중 하나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간 교수로서의 업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말들이다. 이는 교수 성폭력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과 피해학우가 침해당한 교육권 및 인권의 중요성을 대학사회가 얼마나 경미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대학내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교수 성폭력 사건이 갖는 특수성과 이로 인한 일련의 문제점 및 어려움에 비하여, 현 학칙에서는 교육 수혜자인 학생간의 폭력에 대한 정책이 그나마 조금 수립되어 있을 뿐, 교수나 강사 등에 의한 성폭력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대학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 외국 대학 학칙은 좋은 참고가 되어준다고 생각된다. 외국 대학에서는 대학내 성폭력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성폭력 유형이 가지는 특수함과 문제점 그리고 각 유형별, 관계별 성폭력 피해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 및 의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교수 성폭력 사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가해 교수의 처벌과 그 과정에서의 피해학우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조문화시켜 놓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더불어 공인으로서의,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학생과의 표면적인 관계와 구체적인 피해유형과 상관없이 해당 교수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대학내 교수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현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에서 또한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별도의 유형화된 처벌 규정을 세분화시켜 명시해 놓는다면, 교수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에 대한 대학 사회 내에서의 공감대 확산과 가해 교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및 징계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직위에 의한 권력을 매개로 한 교수 성폭력은 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가해 행위라는 점을 상기할 때, 반성폭력 학칙이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자리 학칙도 되지 못할 것이다.

반성폭력 학칙 및 정책은 성폭력의 예방과 처리, 근절의 모든 차원에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대학내의 위계나 권력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 신설 및 강화 필요

교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의 문제와 더불어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문제이다.

현 학칙의 대부분에서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등 피해자의 신변보장과 보호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신분 노출로 인해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게 되거나 가해자 및 가해자 주변인들에게 노출되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중에서도 교수 성폭력의 경우, 다른 대학내 성폭력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문제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피해자의 문제제기 및 권리구제 청구 행위를 교수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일각의 교수사회 분위기로 인해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학우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학칙에 반영하고, 상담원은 이 같은 권리현장을 피해자에게 공지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인지시킬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이 학칙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실을 접수받거나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한 대책위원들이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의 처리절차가 부당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혹은 위원 중 누군가에게 합의를 중용받거나 부적합한 행동을 당했을 경우와 같은 2차 피해의 경우 이를 강제, 징계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2. 가해자 징계권한 확보와 가중징계

- 피신고자의 출석 강제권 행사의 필요성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중 또 하나는 바로 피신고자 혹은 가해학우에 대한 강제권을 제한 당하는 경우들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 학칙에서 피신고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어떠한 조문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신고가 접수되어도, 피신고자가 이를 무시해버림으로써 사건 해결의 어떠한 절차도 거의 진행되지 않은 채 무력화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대학에서는 피신고자의 답변 거부권 행사까지 학칙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학 측에서의 입장은 피신고자의 출석을 강제할 어떠한 권한도 학교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측의 의지부족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미 학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할 하나의 규칙들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만일 성폭력 사건이 학내 상담실에 접수되고, 해당 학생이 이 사건의 가해자로서 지명되게 된다면, 학교는 사건의 적합한 조사와 해결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학생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학칙에 명문화된 이러한 요구에 해당 학생이 불응한다는 것은 대학 공동체 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물어져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고자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대학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권리침해라는 인식은, 그렇다면 현재 대학공동체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대학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학칙과 운영 규칙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학에 의해 해당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징계권 행사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되묻게 한다.

일례로 외국대학의 학칙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고 접수될 경우 이의 중재자는 긴급하게 가해자에게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절차정보를 알려주고,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공지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받은 피신고자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신고자의 출석 강제권 행사와 함께, 만일 학교측의 요구에 피신고자가 불응할 경우, 이를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과 별도로 이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 가중징계 조항 도입의 필요성

학교측의 출석 요구에 대한 피신고자의 불응과 유사하게, 가해사실이 인정되어 일련의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거취하는 건물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어떠한 조항도 현재 대부분의 학칙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징계내용이나 합의 내용을 가해자가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가중 징계 등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더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도 이러한 가중징계 방법이 고려, 도입되어야만 할 것이다.

가해자의 징계내용 위반이나 2차 가해에 대한 가중징계 조항의 도입은, 피해학우에 대한 보호와 또 다른 성폭력 발생의 가능성을 근절하고, 학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만 한다.

- 징계내용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 필요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방식들을 보면 많은 경우, 학사상의 징계(정학·제적·퇴학)와 같이 신분 유지와 관련된 제재방식, 봉사나 가해자 교육 이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사과나 배상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징계 방식들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다 다양한 징계방안들에 대한 고민의 부족은, 다양한 피해유형과 상황들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게 만들거나 위와 같은 징계방식들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징계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들을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신고자가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사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대부분 사건의 조사기간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피신고자는 졸업을 해버림으로써 어떠한 실질적인 징계도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와 같이, 졸업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는 교수나 강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경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징계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역시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3. 대학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로 대학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정책 문제가 존재한다.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일련의 반성폭력 학칙 및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개개 사건의 사후적인 처리뿐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 가능한 토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사건의 발생 자체를 예방·근절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 및 정책이 대학 공동체에 대한 문제제기나 대학내 성폭력 재생산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이나, 개별적인

사건의 처리에 중점을 둔다면, 대학내 성폭력의 예방은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70년대부터 대학내 성폭력이 이슈화되고 제도화된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내 신고센터가 갖추어져 있다 해도 피해학우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Cairns(1997)은 이러한 문제들이, 신고센터나 개인 대상의 프로그램이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기술의 문제에서 성폭력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폭력의 처리를 개인적 대응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일은 성폭력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여성에게 남겨 놓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은 특정개인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성폭력 사건의 사후관리를 위한 장치여서는 안되며, 공동체 내부를 성찰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내 성폭력 역시 다른 성폭력처럼, 가해자의 이상행동에 의한 것이 아닌,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 사회구조,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성별 권력의 문제에서 기인한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성적 비하,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연스러운 친밀감의 표시로 해석하고 공동체 내의 성폭력적인 문화에 문제제기하지 않는 대학의 분위기는 대학내 성폭력이 발생하게 하는 근원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할 때,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 및 정책에 있어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이다.

특히 교수나 강사에 의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 및 강사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및 강화에 대한 요구들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에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질적 시행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매우 회의스럽다. 사건지원 과정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볼 때, 교수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대학은 극히 일부분이며, 시행한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보내는 정도의 매우 소극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수 대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교수들을 한자리에 모으기가 어렵다”거나,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는가”하는 것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의 토로는 사실상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거나 더 불어 교수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우선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북스러움의 토로는, 교수사회의 권위주의를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발생 토대가 되는 우리사회의 여성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가치관은 전문분야에서의 학식과 교양 등이 얼마나 풍부한지와 무관하게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대상에 교수, 학생의 구분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단적으로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수 성폭력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 양성평등지수 및 성희롱 지수의 의무적인 평가와 이의 교수평가제 도입 검토 필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실적인 여건상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는 다른 다양한 방법의 모색들을 통해 보완되어질 수 있다. 그 대안적인 방법의 한 예로서 미국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 미국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해당기

구에 처음 부임될 때뿐만 아니라, 2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양성평등지수 및 성희롱 지수를 측정 받게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만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여전한 한계점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평가들을 시행하고, 이를 교수평가에 반영한다면 교수사회 안에서 대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대학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태도 및 역할에 대해서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지 않을까 한다.

- 대책위원, 징계위원 대상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별도의 교육 필요

대학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학내 성폭력사건을 조사하고 징계하는 위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시행하는 것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은 단지 성폭력 사건의 예방뿐만이 아니라 사건해결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책위원회위원이나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학칙의 실효성을 일선에서 담보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대학내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이들 위원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원들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사건 해결 자체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대학내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징계권을 가지는 위원들의 경우, 사건 지원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성폭력 및 피해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 피해 유형별 특성들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4. 피해자 권리구제의 다양한 창구 중 하나로서의 학칙 적용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다 보면, 많은 대학에서 대학에 신고·접수된 성폭력 사건이 민·형사상 계류 중일 경우, 더 이상의 판단을 보류하고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학칙에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라는 조문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칙은 성차별적인 환경조성의 책임과 문제점 등 현행법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것을 대학 공동체 차원에서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으로 뛰어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할 때 대학에서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외국 대학의 경우,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대학 차원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소송할 경우 학교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닌 것이다. 이는 학칙을 통해 피해 사실을 다루고 입증하는 문제에 있어 소관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사고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중 삼중으로 자기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는 의미로서 사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마치며...

앞서 지적된 내용들 이 외에도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면서 가졌던 경험들 그리고 외국 대학 학칙들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제안들을 덧붙이고 싶다.

많은 대학에서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및 성희롱 상담실의 운영을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학의 기본적인 시각과 정책적 입장 그리고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대학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외국 대학의 경우 대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관점과 이해를 학칙에 구체적으로 포함하거나, 혹은 별도의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의 반성폭력 아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 입장과 이해의 표명은, 대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명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현 학칙과 달리 대학구성원들에게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를 명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더불어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대학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점과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구성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냄으로써 성폭력 예방의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으며, 학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해석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외국 대학의 경우, 징계위원회 강령을 도입하여, 징계위원들 각각의 자세나 유념할 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등을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 학칙들이 징계위원의 구성과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적극적으로 그 도입을 검토할만한 좋은 사례라 생각되어진다.

덧붙여, 일부 대학에서 위원회 구성 중 학생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거나, 학생위원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교수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피신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교수들을 배제할 수 있는, 위원 제척 기피 조항의 신설 문제 등도 덧붙여 제안하고 싶다.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한 성과로서 반성폭력 학칙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의 의미와 실질적 효과성은 단지 학칙의 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담보될 수 없다. 학칙을 제정하면서 대학과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이 본래적으로 의도했던 효과와 의미들은, 실제적인 사건지원과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학칙의 끊임없는 보완과 개정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학칙의 제정에서 더 나아가, 학칙을 통해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유도해내기 위해 학칙이 어떻게 더 보완되고,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와 개입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 본다.